

2008. 11. 24 ~ 12. 24
제154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서



제 천 시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시	의원명	질문내용	답변자
계	6명	14건	
12. 4 (목) 10:00	성명중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
		SBS 드라마 일지매 오픈세트 정산집행 현황은?	부 시장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
	김봉수	<u>제천의병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서면답변)</u>	미래경영본부장
	양순경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부 시장
		관내 관공서 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 및 계획은?	“
12. 5 (금) 10:00	권건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미래경영본부장
		신재생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
		<u>동절기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은?(서면답변)</u>	행정복지본부장
	박성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시 장
		축제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
		보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
	김병창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시 장
		<u>시소유 부동산 현황에 대하여?(서면답변)</u>	“

답 변 서

질문의원	성명증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건설방재과장 김기덕	
제목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u>질문요지</u>		
1. 공사 설계부터 준공시까지 감독현황 및 문제점 ?		
<u>답변내용</u>		
<p>○ 건설방재과장 김기덕입니다.</p> <p>○ 항상 재해대책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명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루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구지정과정, 사업개요, 공사설계, 주민의견수렴, 문제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p> <p><지구지정 과정></p> <p>2003년 07월 25일 집중호우로 제방유실 및 도로침수, 주택 침수 2동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2003년 08월 29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그 후 도 및 소방방재청의 현지확인후 2006년 01월 27일자로 최종확정되어 2006년 03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재지정고시하였습니다</p> <p><사업개요></p> <p>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도 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물량은 하천제방정비 및 도로 1.3km, 교량 2개소로 사업비는 총 60억원(공사비 42억, 보상비 18억원)이 소요됩니다</p>		

<공사설계>

2006년 03월 28일에 용역착수하여, 2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 동년 08월 31일자로 용역준공하였으며, 설계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제방도로포장, 제방도로 가로수 식재, 용수로 존치여부 등 결정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09년 08월 31일이며, 현재까지 4번의 공사감독이 교체되었으며, 자세한 변경사항은 붙임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문제점을 살펴보면....

<용역 설계시>

- 예산관계로 주민의견에 대하여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의 발생과 철저한 현장조사 미흡이 있으며,

<공사감독시>

-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시 변경사항등을 시간을 두고 인수인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 기타 주요사업심사단(T/F팀)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로 설계반영의 지난한 점

○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용역·설계시>

- 주민요구사항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설계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공사 감독시>

- 인사이동시 인수자와 인계자간에 충분한 시간 가지고

인수인계하여 업무인계가 소홀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겠으며, T/F팀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대안을 강구

이를 위해서는 공사감독공무원은 물론 개선조직상에 있는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장 관리에 관계공무원간의 정보를 상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명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루미 재해위험 지구정비사업에 대한 공사설계부터 준공시까지 감독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붙임 : 년도별 공사감독 변동사항 1부. 끝.

년도별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현 근무처	비 고
2006년	시설 8급	이도성	'06.03.28. ~'07.06.30.	금 성 면	
2007년	시설 8급	김용희	'07.07.01. ~'07.12.31.	도 도로관리사업소	
2007년	시설 6급	박 춘	'07.07.01. ~'08.01.14.	장 기 교육 중	
2008년	시설 7급	김찬수	'08.01.15. ~현재까지	건설방재과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성명중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제천시 부시장 김 재 갑
제 목	○ SBS 드라마 일지매 오픈세트 정산 집행 현황은 ?
<p><u>질문내용</u></p> <p>1. SBS 드라마 일지매 오픈세트 건립 등 제작지원 사업의 정산 집행 현황은 ?</p>	
<p><u>답변내용</u></p> <p>제천시 부시장 김재갑입니다.</p> <p>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BS 드라마 오픈세트 건립등 제작지원 사업의 정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2008년 1월 16일 청풍영상위원회와 초록뱀미디어간 체결된 오픈세트건립 등 제작지원협약에 의거, 총 5억원이 초록뱀미디어에 지급되어 집행되었습니다.</p> <p>협약에 따르면 지원금 5억원은 세트공사 착공후 15일 이내 2억, 세트 준공후 15일 이내 1억5천만원, 드라마 첫회분 방영 후 15일 이내 1억5천만원을 지급키로 되어있습니다.</p> <p>이에따라 청풍영상위원회는 2008년 2월 22일 2억원, 4월 1일 1억5천만원, 6월 27일 143,457,071원, 8월 26일 6,542,929원을 초록뱀미디어에 지급하여 집행하였습니다.</p> <p>마지막 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잔액 지급전 정산서 제출에 대한 논란과 정산내용 중 증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차감지급, 증빙 완료 후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p>	

초록뱀미디어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에 따르면
 위 5억원을 일지매 세트제작업체인 SBS 아트텍에 전액 보냈고,
 SBS아트텍은 5억원 중 1억5천9백만원을 직접 시공비로 사용하였고,
 3억4천백만원을 주식회사 크라트라는 회사에 외주를 주어 세트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산증빙내역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천시
 지원한 금 5억원에 대하여만 정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초록뱀
 미디어측이 부담한 소품제작비용 등 정확히 5억원으로 분리정산
 할 수 없었고, 일반관리비와 자체이윤을 각 5%, 10%로 제출하
 였기 때문입니다.

SBS아트텍은 산재, 고용보험료로 6,278,500원, 식대로 1,697,310원,
 소모품비로 1,077,100원, 여비교통비로 3,318,000원, 인건비(미
 술감독, 디자이너, 소품감독, 소품담당 등)로 104,380,500원,
 외부용역비로 2,300,000원, 외주비(기타) 4,180,000원, 운반비로
 35,942,610원, 자재비로 560,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크라트는 직접재료비 77,734,727원, 직접노무비 111,496,340원,
 용역인건비 52,430,000원, 복리후생비 12,721,960원, 여비교통비
 3,451,000원, 통신비 4,000원, 기계유류비 3,423,625원, 사무비 54,500원,
 임차료 748,000원, 수선비 232,000원, 소모품비 350,500원,
 차량유지비 412,560원, 운반보관비 1,331,000원, 외주가공비
 38,000,000원, 중기임차료 13,812,000원, 소모공기구비 1,040,500원
 도합 317,242,712원을 공사원가로 집행하고

일반관리비 15,862,136원, 이윤 33,310,485원을 합하여 총공사
 비로 366,415,333원을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SBS아트텍에서
 지급된 돈이 3억4천1백만원인점에 비추어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23,757,288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답 변 서

질문의원	성명중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부시장 김재갑
제목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업체 선정과정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p>○책임감리업체 선정의 필요성과 소요재정 그리고 2008년 10월말 까지 당초(이의제기 전)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하여?</p> <p>○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업체 선정과정에 따른 문책과 새로운 대책이 제천시 주관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문책에 따른 조사 등은 상급기관인 충북도나 사정기관인 검찰 등에 요구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에 대한 의견</p>	
<p><u>답변내용</u></p> <p>많은 관심과 애착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용역 선정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먼저 하수관거 BTL사업의 개요와 그간 주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BTL사업의 목적은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함으로써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민간자본을 단기간에 선투자함</p>	

으로써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20년이상 앞당겨 시행이 가능함에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을 선투자하여 건설(Bulit)한 후 제천시로 소유권이전(Transfer)하고 시로부터 시설물을 임대(Lease)하여 투자사업비를 20년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사업은 2006년 4월19일 환경부에 사업신청서 제출후 2006년 8월25일 환경부 승인과 2006년 11월 3일 우리시 의회 지방비부담동의안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7년 10월10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개사(푸른제천지키미 주식회사:대우 / 제천에코피아 주식회사:대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가칭 푸른제천지키미 주식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업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2008년 7월3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제천하수처리구역중 하소천 우안처리분구, 용두천 처리분구로서 면적은 5.1km²이며, 사업량은 81km에 달하는 관로의 신설·교체·보수와 7,086개소의 건물부지내 관로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5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후 40개월로 협약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마무리단계로서 설계자문 및 인허가절차를 거친후 2009년 3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책임감리업체 선정의 필요성과 소요재정, 2008년 10월말까지 당초 진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책임감리 용역비는 21억8천9백만원으로서 사업 시행자(대표회사 대우건설)와 맺은 실시협약서 제34조에 의거 주무관청인 제천시에서 감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동 감리업체와 BTL 사업 시행자간에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책임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총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BTL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협약되었습니다(붙임1.참조)

다음은, 2008년 10월말까지 진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을 위하여 2008년8월8일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폭넓은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8월 22일 세부평가기준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붙임2.참조)

1. 유사용역 인정범위

당초 : 하수관거분야만 인정

변경 : 하수도 100%인정 + 기타토목분야 60% 인정

2. 기술개발실적 인정범위

당초 : 하수관거분야만 인정

변경 : 하수도분야 인정

[용어 정리]

* 하수관거: 하수관로(원형관), 암거·개거(사각형 관)

* 하 수 도: 하수관로, 암거·개거, 하수처리장, 빗물펌프장등 하수 시설물의 총체적 개념

위 집행계획에 의거 9월 1일 하수관거 BTL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공고(붙임3.참조)를 하였으며,

동 공고후 비상주감리원중 평가대상 감리원 계획, 건설기술개발 연구실적,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9월2일 정정 공고(붙임4.참조) 하였습니다. 정정내용과 변경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상주감리원중 평가대상 감리원

- 당초 : 상하수도 · 토목시공 · 전기계장 분야
- 변경 : 상하수도 · 토목시공 · 토질 및 기초 분야
- 사유 : 지역업체에 전기계장분야 기술사 미보유로 공동도급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수용

2. 건설기술개발 연구실적 분야

- 당초 : 하수도 분야만 인정
- 변경 : 건설분야(도로,하천,상수도,하수도 등)로 확대 인정
- 사유 : 하수도 분야 실적보유업체가 전국적으로 매우 적음

3. 업무중첩도

- 당초 : 타현장 감리수행중첩 건수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감점 (1건 중첩시 감점1점, 2~3건 중첩시 감점2점, 4~5건 중첩시 감점3점, 6건이상 중첩시 4점)
- 변경 : 가중치적용 삭제 (6건이상 중첩시만 감점 4점)
- 사유 : 국토해양부 「감리전문회사 세부평가기준」 과 대비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판단하여 삭제

그후, 9월19일 8개회사 참여등록을 거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하였고(붙임5.참조), 동 평가서 채점결과 상위 5개업체를 결정 하였습니다..

10월27일 상위 5개 업체별 점수를 개별통지하고(붙임6.참조), 10월 29일 5개 업체 지명경쟁 입찰공고(붙임7.참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리용역 선정과정에 따른 문책과 새로운 대책이 제천시 주관으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와, 문책에 따른 조사 등 상급기관인 충북도나 사정기관인 검찰 등에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용역 선정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언론보도 등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초 평가시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와 기술자격 가점부분에 대한 착오계산 부분이 재평가로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된 점을 통감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업체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해결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붙임8.참조), PQ평가 및 계약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면책임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채점과정에서 발생된 중대한 실수부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BTL사업 책임감리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1. 실시협약서 사본 1부.
2. 집행계획서(당초변경) 1부.
3. 당초 평가공고문 1부.
4. 정정공고관련보고서 1부.
5. 평가서 접수부 1부.
6. 평가결과 통보공문 1부.
7. 입찰공고문 1부.
8. 종합보고서 1부. 끝.

제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2008. 7. 3.

제천시

(가칭)푸른제천지키미주식회사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 ③ 공사감리자는 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감리자는 제30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제31조에 따른 기성검사, 제36조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7조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민간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본 협약 제65조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감리대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의거 기성실적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한다.

제 35 조 (준공전 사용인가)

- ①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

본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며 영문 본을 작성할 경우 한글 본이 우선한다.

제 88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89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하며, 부록 1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에 기재된 출자예정자들 가운데 재무적투자자는 본 협약의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부 승인절차를 경료한 후 연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연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63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2008년 7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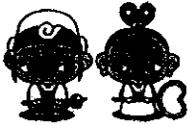
대한민국 제
시장 임 태



[설립예정법인]

(가칭)푸른제천지키미주식회사
대표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표이사 서 종





문서번호	제천시환경사업소 - 15693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8.08. 8.

공개

지방시설주 사보	하수담당	환경사업소 장	미래경영본 부장	부시장	시장
김희진	장흥석	교육	우근영	연기	[Signature]
협 조	관리담당 김해수 * 대상업체가 폭넓게 참여 특 재검토와시행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全面責任監理用役 執行計劃



미래경영본부
환경사업소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全面責任監理用役 執行計劃(案)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감리용역 입찰참가 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코자 함.

1. 책임감리용역 개요

가. 용역명 :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 및 하소천 처리분구 동지역일원
- 용역규모
 - 하수관거 L=82.465km
 - 오수펌프장 1개소
 - 배수설비 6,686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1식
 - 기타부대공사 1식

다. 용역비(예산규모) : 2,189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라.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2. 과업의 범위

가. 대상공사의 추진 전반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내용과 관련 법규등 기타 규정사항

3. 입찰방법

가.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입찰공고

나. 입찰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5개 업체를 선정. 단,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업체만 선정 통보 (단,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을 다시하여 재공고 함.)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같은 법 시행

령 제37조(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및 제38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선정)

4.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 다.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
 - 라. 공동도급시 구성원중 최소한 1개업체는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하수관거정비공사분야 전면책임 감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참가등록시 실적증명 제출 업체
 - 마.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북도내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유희사**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08.07.07)에 의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함

5. 사업수행능력 평가계획

- 가. 평가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6
- 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안) : 붙임자료 내 3.평가기준(안) 참조
- 다. 평가대상감리원

상주감리원 (3명)		비상주감리원 (3명)		비 고
책임감리원(토목수석감리사)	1인	상하수도분야	1인	
보조감리원(토목감리사보)	1인	토목시공분야	1인	
보조감리원(전기/계장감리사보)	1인	전기/계장분야	1인	

라. 유사용역수행실적 : 하수관거정비공사에 한함

6. 추진일정

- 가. 일상감사수행 : 2008. 08. 12 ~ 2008. 08. 29
- 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업체평가서 제출안내 공고(G2B) : 2008. 09. 01
- 다. 참가업체 등록 및 안내서 교부 : 2008. 09. 08. (09:00~18:00)
-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접수) : 2008. 09. 19. (09:00~18:00)
- 마.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통보 : 2008. 09. 29.
- 바. 입찰계약(BTL사업시행자) : 2008.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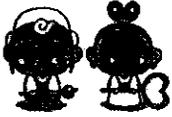
7.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 가. 공고예정일 : 2008. 09. 01
- 나. 공 고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다. 공 고 안 : 불임자료 내 1.공고(안) 참조

8. 조치의견

-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안) 및 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안)에 의거 용역 사업을 시행코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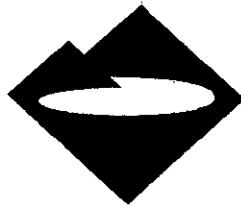
불 임	1.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1부
	2. 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안)	1부
	3. 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등록번호	제천시환경사업소 - 18572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08. 08. 22.

담당자	하수관망	환경사업 소 장	미래경영 본부장	부시장	시 장
이희성	장흥석	교육	이대성	김재경	김영진
협 조	관리담당 장남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 재검토 보고



미래경영본부
환경사업소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 재검토 보고

○. 시장님 지시사항(2008. 08. 08)에 의거 제천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 발주시 대상업체가 가급적 많이 참여될수 있도록 집행계획에 대한 재검토 보고사항임.

I. 현 황

1. 책임감리용역 개요

가. 용역명 : 제천시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제천시 용두천 및 하소천(일부) 처리분구 지역

◦ 용역규모

- 하 수 관 거 : L = 82.465Km

- 오수펌프장 : 1개소

- 배 수 설 비 : 6,686개소(가정집 정비)

- 유지관리 시스템 : 1식

다. 용역비(예산규모) : 2,189백만원(부가세 제외금액)

라.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2. 과업의 범위

가. 대상공사의 추진전반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용역

나.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과 관련법규 사항 등

3. 타시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감리용역 현황 【붙임참조】

4.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 감리 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다.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책임감리 용역 준공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라.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도내 종합 또는 토목감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함.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함.

┌ 서울, 경기업체 : 삼안, 도화, 건화, 한중, 동명, 현대, 이산, 선진(8개사)

└ 충북업체 : 홍익기술단, 한경, 건양, 영진, 한건기술단, 도명, 대원(7개사)

5. 사업수행능력 평가계획

가. 평가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별표 6)

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 평가기준(안) 참조

6. 유사용역분야 및 실적현황

가. 분야별

◦ 하수관거 분야 : 제천시, 김제시 익산시 원주시 대전광역시, 천안시, 당진군, 김천시 (8개 시,군)

◦ 하수관거 + 하수종말처리시설 + 마을하수도분야 : 울산광역시, 거창군, 양산시, 전주시, 제주시, 용인시(6개 시,군)

◦ 하수도 + 기타토목분야 : 군산시, 강릉시 (2개 시, 군)

※ 참고사항

- 하수관거 : 관거,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 연결관 등

- 하 수 도 :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 하수도 + 기타토목 : 하수관거외 5종,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폐수처리장, 교량, 도로, 택지개발 등

나. 하수도 실적적용대상

○. 하수관거 100%	○. 하수처리장(관거포함) 60%
○. 하 수 도 100%	○. 기타토목 60%
○. 하수관거 추진 60%	○. 마을하수도 100%

다. 적용사례

- 최종 준공분 반영
- 최종 준공분(하수관거) + 수행중인 실적(하수관거+하수처리장)
- 예 시
 - ① (하수관거 + 관거수행실적)
 - ② (하수관거 + 하수처리장(관거포함))
 - ③ (하 수 도 + 기타토목)
 - ④ (하수관거 + 마을하수도)
 - ⑤ (하수관거 + 하수처리장)

7. 기술개발 투자 실적

가. 하수관거분야 : 제천시, 울산광역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시, 대전시, 천안시, 진주시, 제주시, 용인시(10개 시,군)

나. 하 수 도 분 야 : 서천군, 거창군, 고령군, 당진군, 군산시, 강릉시, 양산시, 김천시(8개 시,군)

※ 참고사항

- 하 수 관 거 : 관거,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 연결관 등
- 하수도분야 : 관거외 5종,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공작물에 기술개발된 것

대책 및 보고자 의견

- .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에 있어 하수관거의 공종은 우, 오수관로매설과 유지보수 점검을 위해 맨홀, 오수받이, 연결관, 유지관리시스템 등의 시설이 설치되며
- .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시 현장에서 대처방안 등 시공경험이 풍부한 감리업체가 선정되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으므로
- . 현재 타 시,도에서 감리용역 현황을 분석한바 유사용역 실적은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관거포함)으로 많이 채택하고, 또한 일부 지자체는 하수도분야+ 기타 토목분야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 .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하수도 분야로 선정되는바 우리시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검토(안)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분석한바 제 3안으로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2008. 08. 12

보고자 하수담당 장흥석

제천시장 귀하

제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08 - 19호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L)이므로 용역계약은 민간투자자(사업시행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2008년 09월 01일

제천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제천시환경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1)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 및 하소천 처리분구 동지역일원
- 2) 과업의 범위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 3) 과업내용 :
 - 하수관거 L=82.465km
 - 오수펌프장 1개소
 - 배수설비 6,686개소
 - 유지관리시스템 1식
 - 기타부대공사 1식

4) 감리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라. 감리용역비 예산규모 : 2,189백만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마. 입찰예정시기 : 2008년 10월초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 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 다. 공고일 기준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
- 라.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북도내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08.07.07)에 의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함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우리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한다.(단,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후 재공고 함)
 -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 가. 평가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일시 : 2008년 09월 08일 (09:00 ~ 18:00)
- 나. 장 소 : 제천시환경사업소
- 다. 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 등록증사본, 전력시설

울감리업등록증사본, 용역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8년 09월 19일(09:00~18:00)

나. 장 소 : 제천시환경사업소 (☎ 043-641-4170)

- 다.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작업계획 및 기법 5부(별책)

6. 기타사항

-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 나. 참가등록 및 안내서 수령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종합감리전문회사등록증, 전력시설물감리업등록증, 용역실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위임서는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중 “작업계획 및 기법”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 사. 참여업체 및 감리원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아. 용역참가 등록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
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제출 3일전 15:00까지 대표회사 공문으로
FAX 【☎ 043-641-4170】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질
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내륙의바다! 청풍호가 있는 제천」



제 천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2008.09.01자 공고한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코자 합니다.

1. 건 명 :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전면책임감리용역
2. 감리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3. 감리용역비 예산규모 : 2,18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정내역
 - 가. 참여감리원 배치계획 (불임 참조)
 - 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3항
 -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하수도분야 ⇒ 건설분야 실적)
 - 다.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 중복배치 인정을 적용 삭제
5. 정정공고사유
 - 가. 참여감리원 배치계획에서 비상주감리원중 도내 기술사 참여분야(토목시공, 상하수도) 3~4업체로 제한되어 이의가 있어 많은 분야(토질 및 기초)로 변경
 - 나.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서 하수도분야로 계획하였으나 본 건은 건설분야 참여실적으로 변경
 - 다. 업무중첩도 평가요소에서 비상주 감리원 중복배치시 6개이상에서 인정을 적용시 사전 3개월전 공고되지 않아 금회 삭제

불임: 참여감리원 배치계획 1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업무중첩도) 1부. 끝.

【 서 식 3 】

참여감리원 배치계획

책 임 감 리 원	
자격등급	수석감리사 (평 가)
분 야	토 목

보 조 감 리 원	
토 목	감리사보이상 (평가)
토 목	감리사보이상 (미평가)
토 목	감리사보이상 (미평가)
토 목	감리사보이상 (미평가)
전기/계장	중급이상 (평가)

비 상 주 감 리 원	
상하수도	수석감리사(평 가)
토목시공	수석감리사(평 가)
토질 및 기초	수석감리사(평가)
기 계	감리사이상(미평가)
전기/계장	특급(미평가)

주)

- 참여감리원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편성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중 평가감리원은 해당전문분야 기술사이어야 함.
-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상주감리원 1인을 포함하여 지분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상주감리원 미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삭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및투자실적	(1)개발 실적	[10] (3.0)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최초출원인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 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5">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건)</td> <td>50이상</td> <td>50미만 20이상</td> <td>20미만 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1이상</td> </tr> <tr> <td>실적금액(억원)</td> <td>70이상</td> <td>7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5이상</td> <td>5미만 1이상</td> <td>1미만 0.5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활용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 (하수도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실적에 한하여 평가)																							
			○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5년미만</th> <th>5년이상 10년미만</th> <th>10년이상 20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특 허</td> <td>100%</td> <td>80%</td> <td>60%</td> </tr> <tr> <td>실용신안</td> <td>100%</td> <td>80%</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 실적	(4.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이상</th> <th>3.0%미만 2.5%이상</th> <th>2.5%미만 2.0%이상</th> <th>2.0%미만 1.5%이상</th> <th>1.5%미만 1.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점 수</td> <td>4</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body> </table>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 수	4	3.6	3.2	2.8	2.4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 수	4	3.6	3.2	2.8	2.4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적용건수에 대한 금액 실적은 투자 실적에서 제외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1.5)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건설분야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5점/건 -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의 배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4)교육훈련	(1.5)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마. 업 무 중 험 도	(1) 상주 감리원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공사현장(비상주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시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 배치계획참고 (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장 확인시 인정) 보조감리원은 초기투입인 토목분야 감리사보만 평가 									
	(2)비상주 감리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주감리원(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당해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6개이상 중복배치시 : 0점 (삭제) 									
바. 교 체 빈 도	(1)감리 전문회사	[5]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 및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서 규정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참여 감리원	(2.5)	<table border="1"> <tr> <td>교체빈도율(%)</td> <td>10%미만</td> <td>10%이상 20%미만</td> <td>20%이상</td> </tr> <tr> <td>점수</td> <td>2.5 ~ 2.25</td> <td>2</td> <td>0</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체빈도율이 10%미만일 경우 : 배점(2.5) - (최근 1년간 교체건수/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2.5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 및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2.5 ~ 2.25	2
교체빈도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2.5 ~ 2.25	2	0									

「내륙의바다! 청풍호가 있는 제천」



제 천 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결과 보고

1. 환경사업소-17823(2008.9.9)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 수 일 자 : 2008. 9. 19

나. 참가 등록 업 체 : 8개업체

다. 평가서 제출업체 : 8개업체

번호	대표업체	대표자	지분율 (%)	공동수급	대표자	지분율 (%)	소재지
계	8 개사			8개사			
1	(주)채일엔지니어링	이회성	70	(주)영진엔지니어링	이호익	30	청주
2	(주)한국종합기술	이강록	70	(주)한 경	김선영	30	청주
3	(주)건 화	한기태	70	(주)흥익기술단	성낙전	30	청주
4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노진명	70	(주)도명엔지니어링	김윤경	30	제천
5	(주)동일기술공사	김대하	70	(주)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유대현	30	청주
6	(주)이 산	홍종표	70	동림건설기술(주)	변학수	30	청원
7	(주)상 안	임종아	70	(주)한건기술단	박창화	30	제천
8	(주)동명 기술공단종합 건축사사무소	신계식	70	(주)대원엔지니어링	박재균	30	청원

끝.

지방시설주사보 김혁진 하수담당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안대준 이래경영본부장 09/19 윤종섭

협조자 관리담당 권재수

시행 제천시환경사업소-18571 (2008.09.19.) 접수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 / http://www.okjc.net
 전화 043) 641-4170 / 전송 043)641-4187 / fjddl@hanmail.net / 공개

-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IL)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부

[환경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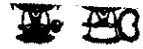
접수일 2008.9.19일

번호	등록업체			등록인 인	비고
	주소	상호	대표자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사합동 382-2	(주)동명기술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신계식		
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주)이산	홍중포		
3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	(주)한국종합기술	이강득		
4	서울 송파구 문정동 101-7	(주)동일기술공사	김대하		
5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9-6	(주)제일엔지니어링	이희성		
6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6-6	(주)드화종합기술공사	노진명		
7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0 (유기운빌딩)	(주)삼산	임종아		
8	경기도 성남시 동안구 호계동 1048-2	(주)건화	한기태		

『내륙의바다! 청풍호가 있는』



제 천 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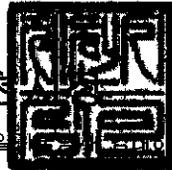
제목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알림(제천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1. 제천시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사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시공고 제2008-19(2008.9.1)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제천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전면책임강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1부 끝

제 천 시



수신자 (주)도화중합기술공사 노진명, (주)동일 김중남, (주)삼안 임종아, (주)이산 홍종표,
(주)제일엔지니어링 이희성

★지방시설주사 장만동 하수팀장 연제운 환경사업소장 전결 10/27 안대준

협조자

시행 제천시환경사업소-20998 (2008.10.27.) 접수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변영길96(천남동 50) / http://www.
전화 043)641-4171 /전송 043)641-4189 / jamgmd64@hanmail.net / 공개

우 체 국
<www.epost.go.kr>
(재출력)

No. : 10237188

제천시우체국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43 (서부동 233)
전화 : 0043-0644-3236
사업자No. : 101-83-02925
접수자 : 창구02 이인자
접수일자 : 2008-10-27 12:34
출력일자 : 2008-11-21 11:14
총요금 : 8,750원(즉납:0원)
(현금 : 0원)
신용카드 : 0원)
부가세과세 공급가액 : 0원
부가세 : 0원

<국내등기우편물>

발송인 : 390-130 환경사업소 충북 제천시
용수 : 5통
요금 : 8,750원(수납요금:0원)
우료접부 : 8,750원)

등기번호 요금 수취인

1352502087556	1,750	138200	김대하
1352502087557	1,750	431060	홍중표
1352502087558	1,750	135080	김종필
1352502087559	1,750	137130	이희성
1352502087560	1,750	427802	임종아

2008년도 고객만족도 10년 연속 1위 수상!
2008년도 택배부분 고객만족도 6년연속
1위 수상!

- 반송시에는 반송료를 받습니다.
- 이 영수증은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 필요하오니 보관하십시오.
- 우편물 송달기준 적용근란지역은 예정된 배달일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에서 등기우편물 배달조회가 가능합니다.
- 배달조회기간은 1년(내용증명 : 3년)입니다.
- 상담문의전화 : 1588-1300

용역공고 상세조회

- ※ 본 공고 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입찰권유서를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권유서는 기술(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일반)용역입찰의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입찰 건에만 적용), 입찰안내서 등 첨부된 모든 규정 및 조건을 포함합니다.
- ※ 단, 계약방법이 '수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정보공개 차원에서 공고되는 것으로 계약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 ※ 조달청에서는 단 공공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입찰건의 세부내용은 잘 알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찰진행 부가정보]

지명경쟁영단	실적경쟁영단	PQ심사결과	TP심사결과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	게시일시	2008/10/30 15:00
입찰공고번호	20081026818-00	참조번호	제천시 25호
공고명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전연책임강리용역		
발주(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실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공고서
계약방법	지명경쟁	국제입찰구분	국내
용역구분	기술용역		
입찰자격	공고서참조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집행관	김남춘	입회관(담당자)	김남춘
PQ심사신청서	방식: 수기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2008/10/30 15:00
TP심사신청서		TP심사신청서 신청기한	
과업설명장소		과업설명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08/11/06 18:00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은 (단, 토요일은 본청, 서울지방청만 업무처리가 가능함)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접수여부	방식: 공고서참조	공동수급협정서마감일시	마감: 공
입찰서게시일시	2008/10/30 09:00	입찰서마감일시	2008/11/06 15:00
개찰(입찰)일시	2008/11/07 14:00	개찰장소	국가장터(제천시)
	2008/10/20081026818-00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 용역 PQ심사결과 판정조회

[광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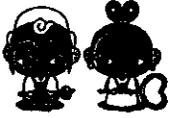
입찰광고번호	20081026618-00	광고명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전연착임관리용역
게시일자	2008/10/29	실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야외현황접수기한	2008/10/31 까지	유의사항	
비고	자료처리상태 : 공개 미등록 : 자료 등록 이전입니다. 대기 : 작업중이며, 공개 이전입니다. 공개 :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판정결과]

☒ [검색건수 : 5건]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심사점수
1	1388101278	(주)아산	
2	2118108009	(주)도화종합기술공사	
3	2118125425	(주)상인	
4	2198107585	(주)동일기술공사	
5	2298107980	(주)재일엔지니어링	

상호명으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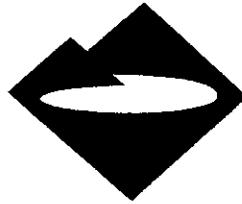


문서번호	환경사업소 - 23389
보존기간	5 년
보고일자	2008. 12. 1

공개

담당자	팀 장	환 경 사업소장	행정복지 본 부 장	부 시장	시 장
김후진	안희연	안희연	김재현	김재현	김재현
협 조					

하수관거BTL사업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재평가 이의신청사항 종합대책보고



행정복지본부
환경사업소

하수관거PI사업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재평가 이의신청사항 종합대책 보고

보고경위 및 요지

- 당초 사업수행능력평가(일명: PQ)로 5개사를 선정하여 '08.10.29일 G2b에 입찰공고하여 '08.11.7 14:00개찰예정이었으나
- '08.11.4 (주)삼안의 이의신청(비상주 감리원 업무중첩도, 기술자격 보유자 가점)을 수용, PQ의 재평가(기법 및 면접제외)와 재입찰공고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 재평가한 PQ점수결과(각 용역사 열람)를 5개사에 '08.11.26 통보(이의 기간:11.27-12.3)하고, 08.11.27일 G2b에 입찰공고(개찰:12.5)하였으나
- (주)도화종합기술공사로부터 11.28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져 감리원 선정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종합대책보고임

I. 이의신청 요지

1. (주)동일기술공사는 입찰계획일 현재(08.11.7) 부정당업체 제제기간(11.1-08.11.30)인 관계로 입찰참가가 불가하였으나 입찰을 취소(11.7)함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됨(의혹 제기)
2. 고의적 언론보도로 재평가절차 정당화
3. 재평가 결과 전면 공개요청
 - (주)삼안의 토목시공기술사 보유가점 0.3은 부당
 - 작업계획 및 기법점수가 타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받은 사유
 - (주)동일기술공사, (주)삼안의 평가서 전면공개
4. 상기사항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하여 전면 재평가 요구

II. 이의신청 내용검토

1. (주)동일기술공사는 입찰계획일(08.11.7) 현재 부정당업체 제제기간(08.11.1-08.11.30)이었으나 입찰을 취소함에 따른 의혹 제기
 - 부정당업체 제제사항은 환경사업소로 문서접수된 사실이 없음
 - (주)삼안 및 (주)한건기술단으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사항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입찰취소한 사항임.
2. 고의적 언론보도로 재평가절차 정당화
 - PQ재평가 내용을 사전에 보도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한 사항임
3. 재평가 결과 전면 공개요청
 - ◆ (주)삼안의 토목시공기술사 보유가점 0.3점 인정은 부당
 - 토목기사자격 사실보유에 따른 0.3점 가점 인정사항임(토목시공기술사는 가점대상이 아님)
 - ◆ 작업계획 및 기법점수가 타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사유
 - PQ공고(08.9.1)제6호 마항 규정상 이의신청대상이 아님(불가함)
 - ◆ (주)동일기술공사, (주)삼안의 평가서 전면공개
 - PQ공고(08.9.1)제6호 마항에 의거 해당사별 개별통보 사항임(불가함)
4. 상기사항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하여 전면 재공고 요구
 - ◆ (주)도화기술공사 이의신청 사항중 1.(주)동일기술공사의 부정당업체 제제기한과 관련하여서는
 -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비추어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가처분등의 명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됨.

III. 예상되는 문제점 .

- 입찰중지 및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시 책임감리업체 선정지연 불가피함
 ☞ 소송진행시 판결후 입찰진행 가능함
- 입찰공고 일정대로 진행시 PQ참여업체의 잇단 이의제기와
- 언론play로 이어져 행정의 공신력 손상이 우려됨

IV. 대안 검토

구 분	제 1 안 (조달청 위탁의뢰)	제 2 안 (일정대로 입찰진행)
전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 및 재입찰 절차 취소 • 지역업체 참여방법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대로 진행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Q절차 및 계약절차 재이행 계약요청(BTL조건등)→ 안내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체결 →계약서송부 • 지역업체 참여보장 상 작업계획 및 기법(가점 2점부여) 우리시 시행 불가피 - 면접에 한해서 외부 위탁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시 변호사 선임대응
소요기간	40 - 50일	가처분신청시 6개월-1년

V. 종합 의견

- 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감리업체 선정지연이 불가피하고
 - 입찰공고 일정대로 진행시 잇단 이의제기로 공신력 손상이 우려되어
- 제1안과 같이 조달청에 계약의뢰(PQ절차 및 계약절차 전면재이행) 하여 조속히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끝.

답 변 서

질문의원	김봉수(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제천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제목	○ 제천 의병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p>질문내용</p> <p><input type="checkbox"/> 제천의병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 시 전체 축제 대비 제천의병제의 비중은? 2. 제천의병제가 시민참여 축제에서 추모행사로 바뀐 경위 및 사유는? 3. 의병제를 축제행사와 추모행사로 추진 시 각 장단점 및 시민의 평가는? 4. 의병제를 추모행사에서 시민참여 대규모 축제로 전환할 계획 또는 활성화 방안은? 	
<p>답변내용</p> <p>제천시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p> <p>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의병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p> <p>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 전체 축제 대비 제천의병제의 비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기본적으로 제천의병제는 제천의 정체성과 제천인의 기상이 복합적으로 혼재한 제천의 근대적 정신문화 뿌리를 행사화한 것이 라고 봅니다.</p> <p>지난 95년도부터 제천의병사(우리나라 근대의병사)가 시작된 1895년 기준 100주년을 추모 기념하는 『창의 100주년 제천의병제』가 첫 행사로 개최되었고 14만 시민모두는 제천의병을 우리나라 역사속에 제천을 가장 올곧고 우뚝서게한 제천의</p>	

역사적 사실로 크게 자랑하여 왔습니다. 다만 제천의병제가 매년 행사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거쳐 오면서 제천의병제에 대한 정체성이 충분해야 한다는 부분과 그 정체성의 기본에 부합된 규모와 성격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작년부터 종전에 한방축제와 일원화되어오는 것을 한방건강축제와 의병제를 이원화하고 의병제에 충실한 행사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정체성면에서 보면 제천의병제가 당연히 지역 어느 축제보다 최고의 보존가치를 갖고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예산규모면에서는 작년 경우 총괄 115백만원으로써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방건강축제, 자동차마니아축제등과 비교 크게 뒤졌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의병제라는 추모성격에 더욱 충실하는 쪽으로 내년 행사는 더욱 정예화와 규모화가 되도록 원칙을 정하여 『추모의 기능을 더욱 다양하고 프로그램화』 하는 한편 제천의병정신을 시민과 지역속에 적극계승토록 『의병정신계승 시민화합행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제천의병제가 시민참여 축제에서 추모행사로 바뀐 경위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제천의병제는 1995년 창의100주년을 맞아 처음 시작되어 2006년 창의111주년까지 시민참여축제로 진행되어 오다 2007년 창의112주년부터 추모행사중심의 의병제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었지만 의병제가 너무 유희적인 오락성 위주의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의병정신의 계승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9행사부터는 제의식을 중심으로 한 추모행사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병제가 제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 할

수 있는 의병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타축제와 차별화된 행사로 만들고자 새로운 관점에서 『추모행사』와 『의병정신계승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의병제를 축제행사와 추모행사로 추진 시 각 장단점 과 시민의 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대로 내년도 제천의병제의 기본방향성은 제 중심 추모행사와 『의병정신계승 시민통합행사』라는 큰 틀입니다. 따라서 2가지 행사 목적성을 가진만큼 단순히 서로가 장단점과 평가를 단언 할 수는 없고 문화란 상호간 많은 모순점을 안고 그 모순되고 상반된 과정속에 성장과 발전축을 형성해 온 것이 역사라고 본다면 내년도 확실한 방향성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또한 냉정한 사후평가를 통해 더욱 업시키는 작업만 지속된다면 시민속에 칭찬받는 제천의병제로 자리매김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금년행사 평가에서 나타난 100백만원 규모의 행사예산을 공연등 다소 추모행사 성격과 이격된 프로그램은 내년행사에는 과감히 폐지하여 추모행사쪽으로 예산편제를 하여 올인하고 병행하여 제천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하는데 역점을 두어 시민화합축제로써 시민속에 칭찬받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하신 의병제를 추모행사에서 시민참여 대규모 축제로 전환할 계획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가 준비하고 계획중인 제천의병제는 단순히 추모행사를 시민참여행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2가지 모두 소화하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성과 정체성에 충실하는 지역보존과 계승이라는 큰 틀에서 행사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천 의병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만 2가지로 나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기능 활성화부문입니다.

① 의병제 일정이 매년 고정 개최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기능에 맞도록 추모기일을 각종 사료와 토론과정을 통해 확정하도록 지역 의견을 결집하겠습니다.

② 제천의병이라는 역사적 사실속에 함께하고 그흔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산소는 있지만 후손이 없어 풀만 무성한 산소를 우리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 관리 함은 물론 지역교육의 산 교육장이 되도록 하고 이곳을 찾는 후손과 탐방객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③ 현재까지 추모행사를 주관해오신 자양영당측에 충분한 제물준비가 되도록 예산편제를 해주는 한편 무엇보다도 전국한시백일장과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접목하겠습니다.

④ 한편, 제천의병이 우리나라 근대사에 더욱 뚜렷하게 자리매김토록 심포지엄, 워크샵등과 다양한 역사평가 사료를 정리 집대성화 하는데도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양영당에 대한 추모 공간 활성화 작업입니다.

① 현재 우리시에서는 자양영당까지 진입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금성쪽에서 자양영당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시 개설하였고 현재는 봉양에서 자양영

당쪽으로 총규모 L=1,883m, B=8m 총예산 2,173백만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8월 완공예정으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② 한편, 자양영당 성역화 공간구조상 다소 문제가 있는 공간 집적화 문제와 주차공간 확보등도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대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의병 계승행사 중심 활성화 계획입니다.

제천의병의 요체는 1895년 을미의병에서 1907년 정미의병 그리고 상해임시정부가 태동하는데 주된 역할을 해온 『국익』과 『구국』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암 유인석과 운강 이강년 의병장이 중심이 되어 외지에서는 의병과 지역주민 전체가 함께한 주민의병으로 구성된 제천의병은 분명히 우리모두가 계승해야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를 살고 있는 14만 시민 모두는 당시의 의병정신을 범시민정신으로 크게 확산하고 보존계승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제부터라도 그 시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추모하고 시민적 정신을 한데 모으는데 17개 읍면동 범시민적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 부터라도 행사는 현재까지 축제추진위원회 소관에서 행사소관을 이원화하여 『추모행사는 별도의 (가칭)제천의병 제추모위원회를 구성가동』 주관토록하고 『시민통합축제』는 시(집행부)직접행사 기획, 집행, 사후정산, 평가 전체를 주관토록 함이 가장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의병제가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일 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병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문의원	양순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부시장 김재갑
제 목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 실적은? (최근 3년간 사업 및 시책별 사업내역, 소요예산, 실적 등) ○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차별화 된 추진 발전 방안은? 	
<p><u>답변내용</u></p> <p>제천시 부시장 김재갑입니다.</p> <p>평소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강현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p> <p>◇ 먼저, 우리시의 연도별 인구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이후 주민등록 인구가 매년 1,000~2,500여명씩 감소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바이오밸리 입주업체의 가동과 인구증가시책 추진 등으로 어느 정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전입 및 출생 인구보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취업으로 인한 전출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인구감소의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 **첫번째,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의 인구증가 시책은 관련부서와 읍면동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표적인 시책사업으로 기업유치 활동,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급, 읍면동 인구증가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인구 증가의 관건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밸리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기착공 및 가동을 향상을 추진한 결과, 2008년 현재까지 전체 입주업체의 50%인 24개업체가 가동되어 85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 중 590여명의 지역 고용을 통하여 타시군으로의 인구유출을 막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 다음은,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늘리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출산축하금은 전액 시비로써 첫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에게 1회 30만원씩, 2006년부터 3년간 845명에 253백만원, 출산장려금은 2007년도부터 2년간 927명에 918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겠습니다.
- 다음은 관내 대학생 장학금지급 보조사업입니다.
타시군에서 진학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한 대학생과 시 인구증가 시책에 협력한 관내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2006년부터 3년간 관외 전입자 598명과 관내 주민등록자 370명 등 모두 968명에 48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단기시책으로 읍면동에서는 지역기업체, 대학교, 유관기관 방문 등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와 함께 전입환영 서한문 발송, 출생축하 인사장 및 선물발송, 수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독려 등 각종 인구증가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인구증가 성과 거양에는 미미하지만, 시민의 인구늘리기 동참 분위기 조성과 감소대책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같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주여건 조성과 우리시 전입자에 대해 친밀한 제천이미지 제고 및 가정과 사회가 함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시 거주인구를 증가시키는 주요시책이라 생각하며 이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두번째로, 향후 인구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추진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출산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대부분의 중소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공통된 과제로 점점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 또한 예외는 아니라 봅니다.
- 인위적, 단기적인 시책 추진으로 인구 증가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기시책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면서, 인구증가 인프라 구축사업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제천 만들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예견되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각오로 공격적인 기업유치 못지않게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책을 발굴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하여 바이오밸리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하이테크밸리(제2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에 박차를 가하여 조기에 입주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산·관멘토링을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안정에도 힘써 인구감소 방지와 증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그동안 우리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업유치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히 추진해 온 대규모 SOC 사업인 동서 고속도로, 태백선·중앙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 천남골프장 조성, M캐슬(리솜)사업추진, 봉양 마곡의 웰빙타운 조성과 한방휴양도시에 걸맞는 관광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 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시 인구감소 대책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자 료

□ **년도별 인구 증감현황**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1
인구수	140,674	138,872	138,201	136,398	136,218	135,879
증 감	△2,560	△1,802	△671	△1,803	△180	△339

□ **년도별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1월
전 입	20,935	20,134	19,969	21,302	21,761	18,463
전 출	23,438	22,124	22,167	21,893	22,144	18,958
증 감	△2,503	△1,990	△2,198	△591	△383	△495

□ **년도별 출산축하금 지급현황** (단위:천원,명)

년도별	예산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인원	금액		
계	337,600	845	253,500	84,100	
2006년	43,000	130	39,000	4,000	시비 100%
2007년	112,200	241	72,300	39,900	
2008년	182,400	474	142,200	40,200	

• 첫째아('07.9월부터) : 1회 30만원 • 셋째아 이상 : 1회 30만원

□ **년도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단위:천원,명)

년도별	예산액	지 급 액		잔 액	비 고
		인원	금액		
계	1,295,550	927	918,300	377,250	
2007년	540,000	494	352,550	187,450	도비50% 지원
2008년	755,550	433	565,750	189,800	'07년부터 시행

• 첫째아 : 미지급 • 둘째아 : 10만원, 셋째아 이상 : 15만원을 12개월동안 지급

답 변 서

질문의원	양순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부시장 김재갑
제 목	제천시 관공서 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질문요지

- 제천시 관공서 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답변내용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고견으로 지도 편달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관공서 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입니다.

우선 모유수유실은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타인의 시선등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서 엄마가 아기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성휴게실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 모유수유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p.87~88)에 따라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내 설치 권유 사항입니다.

○ 직장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유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도서, 명패, 수유쿠션, 락지 등의 모유수유 지원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천시 23개의 관공서 내 모유수유실 설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 공 서	모유수유실설치 여 / 부	관 공 서	모유수유실설치 여 / 부	
제 천 시 청	부	도 서 관	시립도서관	여
제 천 시 의 회	부		여성도서관	여
보 건 소	여		기적의도서관	부
제 천 경 찰 서	부(여성전용휴게실)	제 천 세 무 서	부	
제 천 소 방 서	부(여성전용휴게실)	통계청충북통계사부소	부	
제 천 교 육 청	부	제 천 기 상 관 측 소	부	
충북축산위생연구소	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	육군3105부대3대대	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부	충청북도농산사업소	부	
단양국유림관리소	부	제 천 우 체 국	부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	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부	
선거 관리 위원회	부	-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유수유실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현재 보건소와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세곳입니다. 그 외 제천경찰서와 제천소방서는 각 여성전용 휴게실과 대기실을 갖추고 있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중입니다.

둘째, 제천시 관공서 내 모유수유실 설치 계획입니다.

- 현재 제천시 관공서 내 모유수유실을 미설치한 곳이 많은 관계로 아기와 직장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직원 및 민원인이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8. 09. 23. 직장내 모유수유 및 착유실 설치 홍보 및 권장에 관한 공문을 제천우체국 제천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발송한바 있으며, 관내 관공서중 수유공간이 가능한곳에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수유실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모유수유실에 대한 홍보강화와 기존 관공서 및 기업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축되는 신축청사 등에도 모유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와 읍면·동사무소 등에도 모유수유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장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권유

- 직장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통한 아기와 직장여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사업 연계 추진(인구보건복지협회)
 - 명패, 유축기, 도서 및 리플렛, 띠백지, 포스터(아크릴판넬), 수유 쿠션 등 지원

모유수유 홍보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장점을 알리고 대상자 모두가 모유수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 클리닉운영을 적극적인 홍보로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여 모유 수유율 제고
- 엄마젖 먹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

엄마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

-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선발함으로써 모유수유의 장점 홍보 및 분위기 조성

4) 평 가

- 모유수유 사업의 각 과정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사업 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09년 사업계획에 반영

나. 민간단체를 통한 모유수유 홍보

1) 주요 홍보내용

(1) 모유수유 국민인식 제고

-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국제적 권유기간까지의 수유율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장애요인을 제거
- 세계모유수유주간(8월 첫째주) 기념행사 개최
 -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이하여 모유수유율 증진을 위해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학회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축제 개최 및 홍보·교육 활성화

- 팸플렛, 포스터,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모유수유 홍보·교육 효과 극대화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선발함으로써 모유수유의 장점 홍보 및 분위기 조성

○ 모유대체식품 관련 국제규약 홍보 캠페인

- '81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서 제정된 '모유대체식품판매에 관한 국제규약' 대국민 홍보 및 실천의지 제고

(2) 엄마젖 인터넷 상담(www.mom-baby.org)

○ 엄마젖 상담사이트(www.mom-baby.org) 운영

- 상담위원 : 대한소아과학회 소속 소아과전문의 32명
- 내 용 : 상담일자별 지정 소아과전문의의 온라인 1:1 상담
엄마젖 관련 활동과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
엄마젖 먹이기 사업 관련자료 다운로드 제공
- 추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3) 직장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캠페인

○ 직장내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통한 아기와 직장여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 각종 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보도를 유도하여 엄마젖을 먹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 모유수유·착유실이 없는 직장에 수유실 설치에 대한 자문 및 홍보물 지원

-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명패, 유축기, 모유수유 관련 도서 및 리플렛, 잡지꽃이, 모유수유 교재, 띠백지, 포스터(아크릴판넬), 수유 쿠션 등

- 신청 문의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입기사업팀(T.02-2634-7969)

※ '07.12.31까지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밤」 120호 설치

(4) 인공수유에 관한 불법 광고 모니터링 실시

- 방송·인쇄매체, 병·의원 및 산후조리원, 공공시설 및 기관 등 모유수유 저해요인 모니터링 실시
-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 12>
 - 분유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식에 대한 광고금지 :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 이유식을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을 통하여 광고하면서 조제분유와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차 적발 시 7일, 2차 적발 시 15일, 3차 적발 시 1개월 등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5)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재평가

- 사업 주체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평가 대상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임명된 후 3년이 경과한 병원
-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및 평가도구를 이용한 현장 평가
- 평가 결과 : 재평가 후 재인증 또는 철회

<참 고>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

-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가 모유수유 권장을 위해 1992년 4월부터 함께 펼쳐온 운동
- 1992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만들기 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 시작
-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선정 기준
 -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10단계 이행 등 모유수유 실태를 엄격히